

의 안 번 호	1771	[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]
심 사 보 고 서		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8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8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1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)

가. 제안이유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(감면대상) 재산세 과세기준일(21.6.1.)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 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

※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

○ (감면율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 「지방 세법」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)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,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다 목의 일반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,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.

○ (적용) 2021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- (중복감면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.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(지방의회 의결 감면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(감면 제외대상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2항제4호(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(중복감면 배제)
- 「지방세법」 제111조(재산세 세율)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(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제한 계속 되어 영업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
-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에 대하여 부과되는 '중과세분'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지원 계획이 시달되어
- 내달(7월) 재산세 고지서 송부전에 중과세 대상 업종(유흥주점)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(7월 건축물분) 및 (9월 토지분)을 직권으로 감면하여 혜택을 주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~ 2.(생략)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1. ~ 3.(생략)

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다만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제177조(감면 제외대상)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~ 3.(생략)

4. 고급오락장: 도박장, 유흥주점영업장, 특수목욕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

제180조(중복 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

다만, 제73조, 제74조,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(제73조,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)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.

지방세법

제111조(세율)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1. 토지

가. ~ 나.(생 략)

다. 분리과세대상

1) (생 략)

2)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3) 그 밖의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

2. 건축물

가.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~ 다.(생 략)

지방세법 시행령

제28조(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) ① ~ ⑤ (생 략)

1. ~ 3.(생 략)

4.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(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)

가.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(카바레 · 나이트클럽 ·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)

나. 유흥접객원(남녀를 불문하며,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)을 두는 경우로,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(룸살롱, 요정 등을 말한다)